

1. 생활관 규정

개정일 : 2017년 1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생활관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 생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생활관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제 규정을 결정한다.

제5조 생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 대학 총장과 각 부 처장(교무, 학생, 사무), 생활관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7조 생활관장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생활관내 생활 전체를 감독하며 지도한다.

제8조 생활관에는 임원회를 두어 생활관 운영에 협력케 한다. 단, 임원 선출에 대한 규칙은 따로 정하고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입관 및 퇴관

제9조

- ① 입사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입사원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입사는 학기 단위로 허가되며 여건이 허락된 경우 언제나 입사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 ③ 입사자 선발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입사가 허락된 자라도 소정의 생활관비와 자율적 경비를 부담해야 입관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관비 및 자치회비) <개정 2017. 1>

-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율적 경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② 보증금, 생활관비 및 자율적 경비는 입사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퇴실시 보증금은 반환된다).
- ③ 생활관비는 한 달(30일)을 기준하여 매월 초에 납부하고, 중간에 입사할 경우 입사한 날 수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신설 2017. 1>
- ④ 퇴사 시 한 달을 기준하여 기 납부한 생활관비에서 잔여일 만큼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7. 1>
- ⑤ 자치회비는 매달 납부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7. 1>

제11조 삭제

제12조 본 생활관을 자원 퇴실코자 하는 자는 적어도 15일 전에 생활관장에게 자퇴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7. 1>

제13조 다음 경우에는 퇴실 조치된다.

- ① 공동생활에 전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 ② 학적을 상실한 자
- ③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④ 생활관 내규를 현저히 위반한 자
- ⑤ 학교생활 및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

<개정 2017. 1>

제4장 규율 및 의무

제14조 생활관장의 허락이 없이는 임의로 호실을 옮기지 못한다.

제15조 생활관에 입사하는 사생은 별도로 정하는 사생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 ① 지정된 장소 이외의 생활관에는 가족 외 이성의 출입을 금한다.
- ② 입사 학생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생활관에서 숙박할 수 없다.
- ③ 사생은 누구나 호실을 청결케 하며 생활관 전체의 환경을 미화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1>

제16조 본 생활관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또는 퇴관을 명한다.

제17조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파손자가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입사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제19조 (사생활 보호)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누구도 개인 호실 점검을 금지한다. 단, 화재 및 비상시는 예외로 한다.(추후 통보)

<신설 2017. 1>

제5장 재산유지

제20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생활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생활관장의 허락 하에 재학생일 경우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

부 칙

- 1)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 외의 규정은 성경과 만국 통상례를 따른다.